

디자인특화 강원지역 청년디자이너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재)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디자인 전문인력의 지역 내 정착유도를 통한 지역디자인산업 활력 제고 및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디자인 특화 강원지역 청년 디자이너 일자리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강원도 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2. 1. 11.

재단법인 강원디자인진흥원장

공모개요

- 공고기간 : '22. 1. 11.(화) ~ '22. 1. 24.(월) (10일간)
- 신청접수 : '22. 1. 17.(월) ~ '22. 1. 24.(월) (6일간, 근무일 기준)
- 공모대상 : 강원도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, 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청년*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
 - ※ 디자인(전문)회사 12개, 디자인활용회사 4개
 - * 청년 연령기준 : 2022. 1. 1. 기준 만 39세 이하
- 지원내용 :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(청년)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(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) 기업에 지원
 - ※ 기업 자부담 10% 의무, 기본 월 급여 200만원 이상必
 - ※ 사업 운영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

기타사항

- 채용직원의 연봉이 2,400만원 미만일 시, 기업에는 청년 임금의 10%(기업 부담분)를 제외한 금액 지원 ex) 청년임금 월 200만원일 경우, 180만원(90%) 지원
-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 매칭(재공고 시 청년 추가 매칭 가능)

□ 자격요건

○ 청년 :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유지

- 디자인 관련 전공자(복수전공 포함, 고졸포함) 또는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
- 디자인 관련 업무 경력단절자

※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통보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1~3개월 내 전입

※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사업 자격을 상실(지원금 회수 조치)

○ 사업체 : 강원도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

▪ 제외 대상

- 국가 및 지자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기관
-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, 자본잠식상태 등인 사업장
-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 의거, 임금 등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 사업주
-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·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
-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(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
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'22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
(다만, '21년 기존유형과 신규유형 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)
-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 - ※ 사업참여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의 중도포기(사유 불문)가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체 채용 지원하지 않고, 사업 참여 종료 및 6개월간 후순위로 관리
- 정규직 채용실적이 없는 사업체*, 단순 서비스 업종 등**
 - * 사업 신청 전 최소 1명, 6개월 이상의 정규직 채용실적 필요
 - ** 전화·방문고객 단순상담, 커피점·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接客·판매, 건설·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,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,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

□ 사업 참여사업장의 의무

○ 본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해당 청년이 교육(기본·심화), 컨설팅 등 기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

* 교육은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며, 세부일정은 추후 통보

→ 사업장은 참여자 선발 후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시 근로시간 인정하여야 함

* 의무 교육 시간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, 사업장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

○ 진흥원에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조금 사용 및 부정수급에 관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

- 청년-사업장-지자체 3자 약정을 통해 계속 고용 의무를 확약하여야 함
 - ※ (예외 증빙필요)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, 청년이 창업 등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, 사후 관리 과정에서 청년의 현저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
- 청년 임금은 기본 월 급여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, 사업장은 해당 청년 임금의 10% 의무 부담
 - ※ 4대 보험 기업 의무부담분은 기업에서 별도 부담

□ 기타사항

- 한 사업장에 한 명의 청년 매칭
- 3개월 내 사업장-청년 매칭되지 않아 인건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, 사업장 및 청년과의 협약을 해지함(진흥원의 판단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함)
- 협약을 해지한 후에는 예비순위 사업장 및 청년에게 기회를 부여함

III 추진절차

○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IV 평가방법 및 기준

- 참여기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
 - 위원구성 : 내·외부 전문가 5인 내외
 - 평가방법 : 서류심사
 - 심사기준(안)

평가항목	세부항목	배점
기업역량	- 기업 근로자수, 매출액 등 경영상태 - 사업 추진 적정성 등	20점
근로조건	- 근로조건·복리후생 등	20점
참여의지	- 지원 필요성, 기업 성장 기여 가능성 - 정규직 채용 여부 등	30점
활용계획	-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담당 업무 내용의 타당성 - 성장기여 가능성 등	30점
총 점		100점

V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
- 접수기간 : '22. 1. 17.(월) ~ '22. 1. 24.(월) (6일간, 근무일 기준)

- 접수방법 : E-mail 접수 (gidp02@gidp.kr)

- ※ 신청서류 일체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송부, **선정기업에 한해 향후 원본 제출**
- ※ 서류접수 후, 반드시 사업담당자 연락 필수(070-7791-3616)

-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참여기업	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1부
	② 참여기업 확인서
	③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
	④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
	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	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1부
	⑦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
	⑧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내역 1부
	⑩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 1부 - 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 및 회계사 확인
	⑪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필증 1부(해당시)

- ※ 서류①_②,③,④는 강원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gidp.kr>)에서 다운받아 작성
- ※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자료 요청 가능

□ 선정결과 공고

- 공고일자 : 2022. 2. 9.(수) 예정
- 공고방법 :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업 개별 연락

□ 문의처

- 운영기관 : (재)강원디자인진흥원
- 문의처 : ☎ 070-7791-3616, E-mail yssl4@gidp.kr

VI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 제외 사유 등이 밝혀지면 즉시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(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전부 배제 등 추가조치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)
- 중도탈락자 발생 따라 청년 근로자를 대체선발* 하는 경우 선발 시점부터 24개월 지원 원칙, 사업장이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이 참여 * 단, 대체선발은 예산범위 내 채용 가능(1회로 제한)
- 대상 사업장 확정 후, 청년 선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, 선발 완료된 청년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면접* 진행
*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업장에서는 가급적 언택트 방식(화상면접)으로 실시
- 부정사업장으로 밝혀질 경우, 해당사업장은 해당 기관(수행기관)의 결정에 따라 1차적으로 보조금 환수, 고발 조치 등 될 수 있으며, 중앙심의회(행안부)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, 보조금의 환수 등 진행
-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
-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「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(행안부)」, 「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(2022년 합동지침 발행 전까지 2021년 합동지침 규정 준행)」, 「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계획(강원도)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고문 내용 외 추가적인 사항은 해당 규정을 확인